

한의원 원외탕전 관련 보건소 제출용 서류

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서

- 저희가 서류 양식만 보내드립니다. 인적사항과 기재 내용을 기입하시고, 변경 전·후의 내용에 “원외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셔서 서류 제출시에 기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증명서 원본(←한의원 준비서류)

-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한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뒷면의 변경 내용에 “원외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므로 꼭 원본을 가져 가셔야 합니다.

3. 공동의료기관간 계약서류 사본

- 저희가 원외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계약서 2부를 만들어 저희 쪽의 내용만을 기입하여 보내드립니다. 2부 모두에 내용(1면에 한의원 명칭, 뒷면에 인적사항)을 기입하시고 날인과 앞장과 뒷장 사이에도 간인을 하신 후, 1부는 원장님께서 보관하시고 나머지 1부는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이 계약서의 사본도 보건소 제출용으로 필요합니다.

4. 공동이용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신고증명서) 사본

- 원장님께서 이용하실 자향요양병원 부속 “수 원외탕전실”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뒷면까지 보내드립니다.

5. 공동이용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사본

- 저희가 허가받은 원외탕전실의 설치내역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6.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

-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를 원외탕전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모두 기입해서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공란의 원장님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신 후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7. 탕전실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저희가 보건소에서 허가받은 원외탕전실의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3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의료기관 현황]

의 료 기 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설립 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병 원	06 기타
	[] 시도 립	[] 시군 구립	[] 지방 의료원	[] 기타 공립	[] 학교 법인	[] 특수 법인	[] 종교 법인	[] 사회복 지법인	[] 사단 법인	[] 재단 법인	[] 회사 법인	[] 의료 법인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신고인(개설자) 현황]

법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 설 자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에 ▼표 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설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과 폐쇄	격리 병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병실					유[]	유[]	유(내[], 외[])
병상					병상					무[]	무[]	무(원외공동 이용[], 무[])
면적 (m ²)					총 면적 (m ²)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무 []	의무기록실	유 [] 무 []
급식시설	유 [] 무 []	소독시설	유 [] 무 []	자가발전시설	유 [] 무 []
방사선장치	유 [] 무 []	시체실	유 [] 무 []	장례식장	유 [] 무 []
병리해부실	유 [] 무 []	한방요법실	유 [] 무 []	적출물처리시설	유 [] 무 []

[인원현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01	내과	11	소아청소년과	21	재활의학과	50	구강의안면외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경과	12	안과	22	핵의학과	51	치과보철과	80	한방내과
03	정신건강의학과	13	이비인후과	23	가정의학과	52	치과교정과	81	한방부인과
04	외과	14	피부과	24	응급의학과	53	소아치과	82	한방소아과
05	정형외과	15	비뇨의학과	25	직업환경의학과	54	치주과	83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06	신경외과	16	영상의학과	26	예방의학과	55	치과보존과	84	한방신경정신과
07	흉부외과	17	방사선종양학과			56	구강내과	85	침구과
08	성형외과	18	병리과			57	영상치의학과	86	한방재활의학과
09	마취통증의학과	19	진단검사의학과			58	구강병리과	87	사상체질과
10	산부인과	20	결핵과			59	예방치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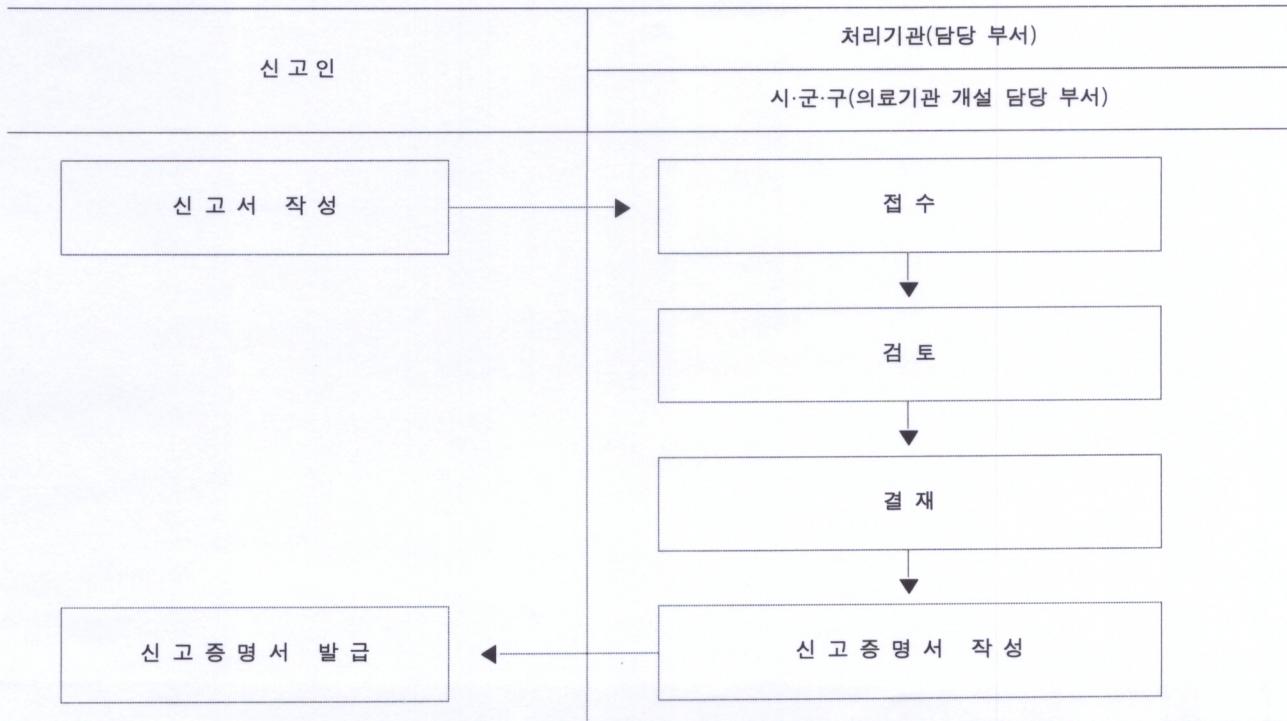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협약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탕전실 공동이용 계약서

()한의원/한방병원 대표 (이하 “갑” 이라 한다)와 수원외탕전실(자향
요양병원 부속,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을” 을 “갑” 의 원외 탕전실로 사용하는
데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1. 목적 : 본 약정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 “을” 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
무 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갑” 의 권리 및 의무

1) “갑” 과 “을” 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별표 4 - 11호의 2.탕전실]의 내용에
따라 탕전실을 “갑” 의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사용함에 동의하고, 한약조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갑” 의 한약조제 자료의 요청이 있을 시는 “을” 은 신속히 자료를 제공한다.

3) “갑” 의 처방은 철저히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의 고객정보 또한 비공
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을” 의 권리와 의무

1) “을” 은 “갑” 에게 최상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한약 조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2) “을” 은 “갑” 에게 규격에 맞는 한약(한약 규격품)만을 조제하여 제공하고, 투명
경영을 하여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갑”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 한약 조제서비스

2) 마케팅 지원 (안정성 홍보물, 배송 이력 추적 시스템 등)

3) 최상의 제품 공급 (기타 한방제제 및 소모품 등)

5. 효력 - “갑” 과 “을” 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은 효력을 가진다.

6. 기타 - 본 약정에 관하여 쌍방의 의견이 다른 경우나 이 약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보관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갑”

“을”

상호 :

상호 : 수원외탕전실 (자향요양병원 부속)

주소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2길 4-19
2층

대표 :

대표 : 박정민



탕전실 공동이용 계약서

()한의원/한방병원 대표 (이하 “갑” 이라 한다)와 수원외탕전실(자형 요양병원 부속,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을” 을 “갑” 의 원외 탕전실로 사용하는데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1. 목적 : 본 약정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 “을” 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갑” 의 권리 및 의무

1) “갑” 과 “을” 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별표 4 - 11호의 2.탕전실]의 내용에 따라 탕전실을 “갑” 의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사용함에 동의하고, 한약조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갑” 의 한약조제 자료의 요청이 있을 시는 “을” 은 신속히 자료를 제공한다.

3) “갑” 의 처방은 철저히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의 고객정보 또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을” 의 권리와 의무

1) “을” 은 “갑” 에게 최상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한약 조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을” 은 “갑” 에게 규격에 맞는 한약(한약 규격품)만을 조제하여 제공하고, 투명 경영을 하여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갑”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 한약 조제서비스

2) 마케팅 지원 (안정성 홍보물, 배송 이력 추적 시스템 등)

3) 최상의 제품 공급 (기타 한방제제 및 소모품 등)

5. 효력 - “갑” 과 “을” 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은 효력을 가진다.

6. 기타 - 본 약정에 관하여 쌍방의 의견이 다른 경우나 이 약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보관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갑”

“을”

상호 :

상호 : 수원외탕전실 (자향요양병원 부속)

주소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2길 4-19
2층

대표 :

대표 : 박정민



일산동보제22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의료기관	명칭	자향요양병원	종류	요양병원(일반요양병원)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490 (풍동)		
개설자	진료과목	한방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성명(법인명)	박정민	생년월일	1976년06월29일
	주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44, 108동 202호 (돈암동, 브라운스톤 돈암아파트)		
규모	면허종류	한의사	면허번호	제 13217 호
	규모	입원실	47 실	병상 134 병상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2020년 09월 25일

고 양 시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월일	내 용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2020-09-25	의료기관개설허가 민원 개설예정일 : 2020-09-25	홍예은
2020-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전: 탕전실 공동이용 없음 ○ 변경후: 탕전실 공동이용 16개소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 탕전실 설치 의료기관 16개소 1) 채움한의원-씨알원외탕전, 2) 안중한의원-안중원외탕전, 3) 남상천 한의원-남상천한의원원내, 원외탕전실, 4) 체감한의원-수원외탕전실, 5) 흑부리한의원-흑부리한의원원외탕전실, 6) 이영돈한의원-나눔원 외탕전실, 7) 원미한의원-원미공동탕전, 8) 에스알한의원-에스알한의원부설원외탕전소, 9) 큰나무한의원-행림원외탕전, 10) 유립한의원-유립한의원탕전실, 11) 해밀한의원-해밀한의원원외탕전실, 12) 참조 은한의원-참조은원외탕전, 13) 청연한방병원-청연한방병원원외탕전실, 14) 교감한의원-바른한약, 15) 자생한방병원-남양주원외탕전실, 16) 원일한의원-원일공동탕전. 	홍예은
2020-1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과목 : 한방내과, 마취통증의학과 - 시설(병상 수) : 21실 65병상 - 소재지 : 일산동구 백마로 490, 지하1층, 지상2층(3,274.6m²) ○ 변경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과목 2과목 추가 :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 시설(병상 수) : 47실 134병상 - 소재지 : 일산동구 백마로 490(5,207.72m²), 변경사유: 시설, 소재지, 진료과목 변경 	홍예은
2021-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탕전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칭: 자향요양병원 부설 수원외탕전실 -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2길 4-19, 2층(이문동) - 한약사: 황보현(2428) 	김경남
2021-0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탕전실 한약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전: 한약사 황보현(제2428호) - 변경후: 한약사 신범영(제377호), 이상근(제2903호) - 변경적용일: 2021-06-30 	김경남
	— 이 하 여 백 —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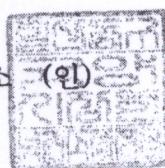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신고인 (개설자)	성명 (법인명)	박정민	주민등록번호	760629-1001214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44, 108동 202호			
	면허종류	한의사	면허번호	제13217호	
의료기관	명칭	자향요양병원	종류	요양병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490(풍동)			
	진료과목	한방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원외탕전실 현황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2길 4-19, 2층(이문동)			
	전화번호	02-957-3375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한의사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약사 (2명)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신범영	제377호
				이상근	제2903호
변경사항	변경 전	한약사 황보현(제2428호)			
	변경 후	한약사 신범영(제377호), 이상근(제2903호)			

위와 같이 확인함

2021년 6월 30일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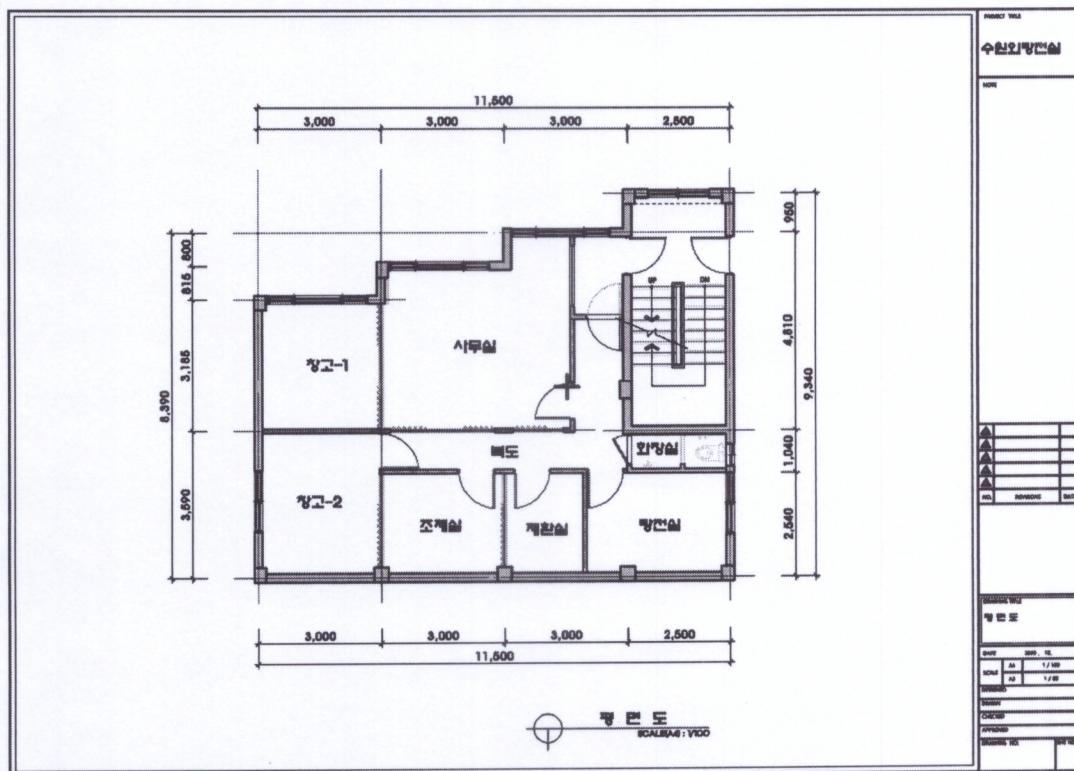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

공동이용 신 청 의료기관	명칭		종류		
	주소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탕전실 설치 의료기관	명칭	자향요양병원	종류	요양병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490 (풍동)			
	개설자	박정민	주민등록번호	760629-1001214	
	면허종류	한의사	면허번호	제13217호	
탕전실 현황	<input type="checkbox"/> 원내 텡전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외 텡전실		
	원외 텡전실인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2길 4-19, 2층			
	전화번호	02-957-3375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한의사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약사 (2 명)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신범영	제377호
			이상근	제2903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의 계약 서류 사본 2. 공동 이용되는 텡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3. 공동 이용되는 텡전실이 원외 텡전실인 경우, 원외탕전실 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와 원외 텡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사본 (원외 텡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해당 관할청에서 발급 받음) 				

수원외탕전실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구 분	설 명
1. 사무실	원외탕전 관련 사무를 보는 곳
2. 조제실	처방전에 따라 직접 한약재를 조제하는 곳
3. 제환실	조제한 한약재를 제분 및 제환하여 환제를 만드는 곳
4. 탕전실	조제한 한약재를 탕전하여 탕제를 만드는 곳
5. 창고	한약재 및 부자재를 보관하는 곳





제 377 호

한약사 면허증

성명: 신범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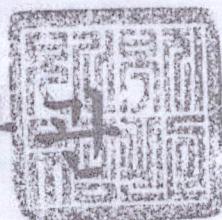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761204 -

약사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2002 . 5 . 9 .

보건복지부장



제2903호



한약사 면허증



1. 성명 : 이상근

2. 생년월일 : 1994년 5월 18일

3. 근거 : 「약사법」 제4조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2021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